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급여범위)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'갑'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
② '갑'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구분	이용일	이용시간
이용시간 (1)	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□ 토 □ 일	오전 오후 시 분 ~ 오전 오후 시 분 ~
이용시간 (2)	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□ 토 □ 일	오전 오후 시 분 ~ 오전 오후 시 분 ~

※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

※ '갑' 또는 '병'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③ '을' 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.다만,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	비고
이용시간1								*※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*
이용시간2								

④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 제2조 제1호의 일요일, 가산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 은 급여비용의

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수 있다

⑤ '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' 의 유급휴일 및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' 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 은 급여비용의 5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

⑥ 야간·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⑦ '을'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'갑' 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.

제5조(계약자 의무)

① '갑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월 이용료 납부
2. 방문요양 범위내 급여이용
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4. 기타 '을' 과 협의한 규칙 이행

② '을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방문요양.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2. 급여제공 중 '갑'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 에게 통보
3. 급여제공시간에 '갑'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7. 기타 '갑' 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
③ '병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'갑'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갑'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 에게 통보
4. '갑'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 에게 통보
5. 기타 '을' 의 협조요청 이행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① '갑' (또는 '병'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3.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제공시간을 '갑' (또는 '병')의 동의 없이 '을'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4. 기타 '갑'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'을'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2. '갑'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'갑' 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'갑'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5.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6. '갑'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.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7조(계약의 해지)
① '갑' (또는 '병'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② '을'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 과 '병'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제8조(이용료 납부)
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'을'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 일에 정산하고 '갑'

(또는 '병')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.

③ '갑' 은 매월 이용료를 법인통장에 현금 또는 계좌로 매월 15일이내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④ '을' 은 '갑'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재계약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요양·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'갑' 과 '을' 이 필요한 경우

단,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계약서 뒤에 변경내용을 별첨하는 형식으로 한다

제10조(건강관리)

① '을' 은 '갑'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'을'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·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'갑'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위급 시 조치)

① '을'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'갑'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'갑' 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'병'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'갑'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'을' 은 즉시 '병' 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① '갑'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② '을' 은 '갑'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'을'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④ '을'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⑤ '을' 은 '갑'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3조(기록 및 공개) '을' 은 '갑'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

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 (또는 '병'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배상책임)

① '을'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
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
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)은 '을'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2. '을'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4. '갑'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5조(기타)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 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[별표 1]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5. 01. 01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90분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2,160	240분 이상	68,03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
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40% 감경자 (보험료감경대상자 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)	9%
60% 감경자 (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	6%

[별표 1]

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5. 01. 01)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6,48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7,9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

○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
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40% 감경자 (보험료감경대상자 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)	9%
60% 감경자 (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	6%